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정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07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문정복・민병덕・최기상

백승아 · 문금주 · 윤준병

진선미 • 김영배 • 고민정

이원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, 고열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"을 "전용주차구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항제1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 교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전용주차구역 등) ① -----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 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 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----전용주차구역-----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1. ~ 4.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 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. <단서 신설> 다만, 제1항제1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「유아교 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치원 및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

	러하지 아니하다.
③ ~ ⑫ (생 략)	③ ~ ⑫ (현행과 같음)